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

2023. 9.

교 육 부

##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근거	1
II. 추진 경과 및 관련 규정 개정 현황	2
III.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3
1. 아동학대 업무의 이해	3
2. 교육감 의견제출 추진 절차	5
3. 교육감 의견제출 방법 및 일정	6
붙임1 교육활동 확인서 양식	10
붙임2 교육감 의견서 양식	11
붙임3 교원의 생활지도 관련 관계법령	12

## I. 추진 배경 및 근거

### □ 추진 배경

-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및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

※ 교육부 설문조사('23.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나?  
→ 교원 97.7%, 학부모 88.2% "심각하다" (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응답)

-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과정을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신속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마련 필요

### □ 추진 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23. 9. 12.)

교원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합의(9.14.)
  - (교육청)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등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으로 신속히 제출
  - (조사·수사기관)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여 조사·수사 처리, 수사기관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 관련 의견제시 시 참고 의무

[참고] 교권보호 4법 中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2023.9.21. 본회의 통과)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II. 추진 경과 및 관련 규정 개정 현황

### □ 추진 경과

-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 운영 합의('23. 9. 2.)
- 당정협의회('23. 9.12.), 「아동학대처벌법」 및 부처별 관련 지침 개정 합의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조사·수사기관에서 참고하도록 의무 신설

※ 동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정점식, 이태규 의원 등 발의, '23.9.19.)

-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 회의(9.14.)
- 교육감 의견제출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9.18~20.)

### □ 관련 규정 개정 현황

- ① (교육부) 초·중등교육법('22.12.) 개정 및 시행령('23.6.)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3.9.1.), 유아교육법 개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구체적 기준이 되는 '유아 및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시행('23.9.1.)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함(교원지위법 개정, 9.21.)
- ② (법무부)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9.8.)
  -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
  - 교육감이 의견 제출 시 적극 참고 의무
  -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 신속 처리 등
- ③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9.1.)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 판단기구\*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대여부를 판단하도록 교육관계자 의무 참여 및 의견청취 의무화
  - \* 지자체 자체사례회의, 사례판단회의 등 아동학대 판단 1차 기구
- ④ (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실무' 등 지침 개정(9.22., 예정)
  - 교육감 의견 제출 시 수사 등 사안 처리에서 참고 의무

### Ⅲ.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 1. 아동학대 업무의 이해

#####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 아동학대 유형(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구분	주요 내용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성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 행위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 ①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체포감금 등), ② 아동복지법상 범죄(아동매매, 아동에게 음란행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 등) ③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④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치사 등)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비교>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근거법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정의	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②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폭행, 상해, 유기, 협박 등)		
가해자의 범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보호자: 친권인,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교원도 포함될 수 있음)	보호자		
조사주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조사·수사 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상담·교육 실시(「아동복지법」 제29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② 친권 제한 또는 상실(「아동복지법」 제18조)	형사처벌		
포함관계	<-----아동학대----->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아동학대범죄</td> </tr> </table>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			

#### <조사·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처리 담당자>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업무(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
- ▶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사법경찰관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를 말하고, 사법경찰리는 경사·경장·순경을 말함
- ▶ (학대예방경찰관)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 수사연계, 사후관리 등의 업무 총괄,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경찰

## 2. 교육감 의견제출 추진 절차

###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조사확인팀

- (조직) 교육지원청 학생지원국(과) 또는 교육국(과)에 설치
- (인력) 교육활동 전담공무원(필수 인력) 1명, 지원인력 2명 내외 배치
  - 교육전문직(전담) 1명, 주무관 1명,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
  - ※ 교육지원청 인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전담직원은 반드시 두도록 함
  - ※ 교육지원청내 변호사 부재시 교육청 소속의 변호사가 지원
- (기능)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조사·확인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무담당자는 **단위학교 방문**(부득이할 경우 유선) 등을 통해 '교육활동 확인서(붙임1)' 작성 및 **교육청으로 공문 상신** (최초 사안 접수 후 5일 내)
    - ※ 필요시, 교육현장 전문가 등으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시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 [교육청] 전담 부서

- (조직) 교육청내 교육감 의견 제출 담당자 별도 지정
- (기능)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해당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붙임2)'를 작성
  - 7일 이내(최초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후) 관할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등)으로 공문 통보
  - ※ 필요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법률 자문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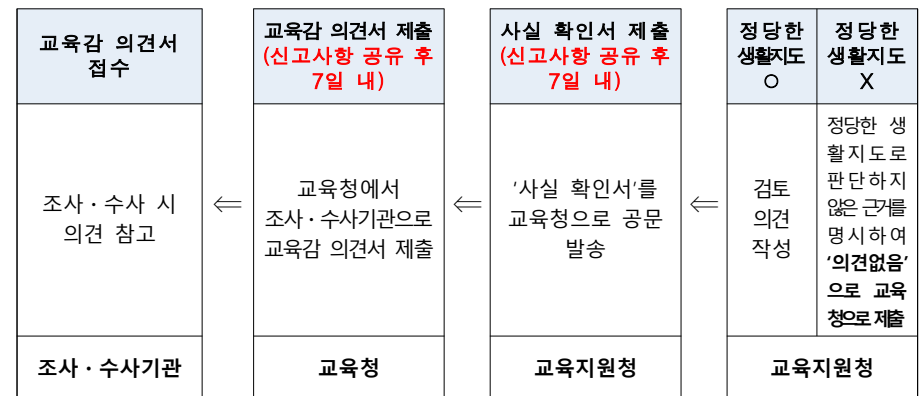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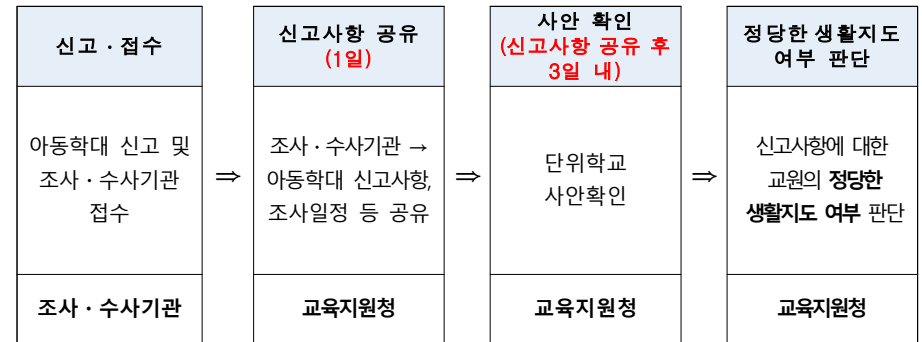
#### <조사·수사기관 공문 수신처>

- ▶ (조사기관)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관련 부서(아동보호팀 등)
- ▶ (수사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학교로 신고사함을 통보한 경찰서의 수사 담당자

## 3. 교육감 의견제출 방법 및 일정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정보 공유 →
- 교육지원청 총 3일 이내 사안 확인 및 총 5일 이내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 상신 → 교육감이 총 7일 이내 조사·수사기관으로 의견 통보

### < 의견 제출 흐름도 >



## □ 112 신고 시

- (신고사항 공유)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이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 사안 발생 건(신고자 정보, 피해아동 정보 제외)을 유선과 공문으로 안내  
→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또는 유선 접수 시 사안 발생 1일로 봄
- (사안 확인)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지자체·경찰의 조사·수사와 별개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기존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최초 접수후 3일 내)
  - 교원을 중심으로 확인하되, 피해아동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면담 실시
  - 학생 면담 동의를 받은 경우, 학생의 트라우마 등 정서적인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2차 피해 예방
  - 필요시, 학교장(감), 동료교원,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파악

###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 ①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학교의 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학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③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 ④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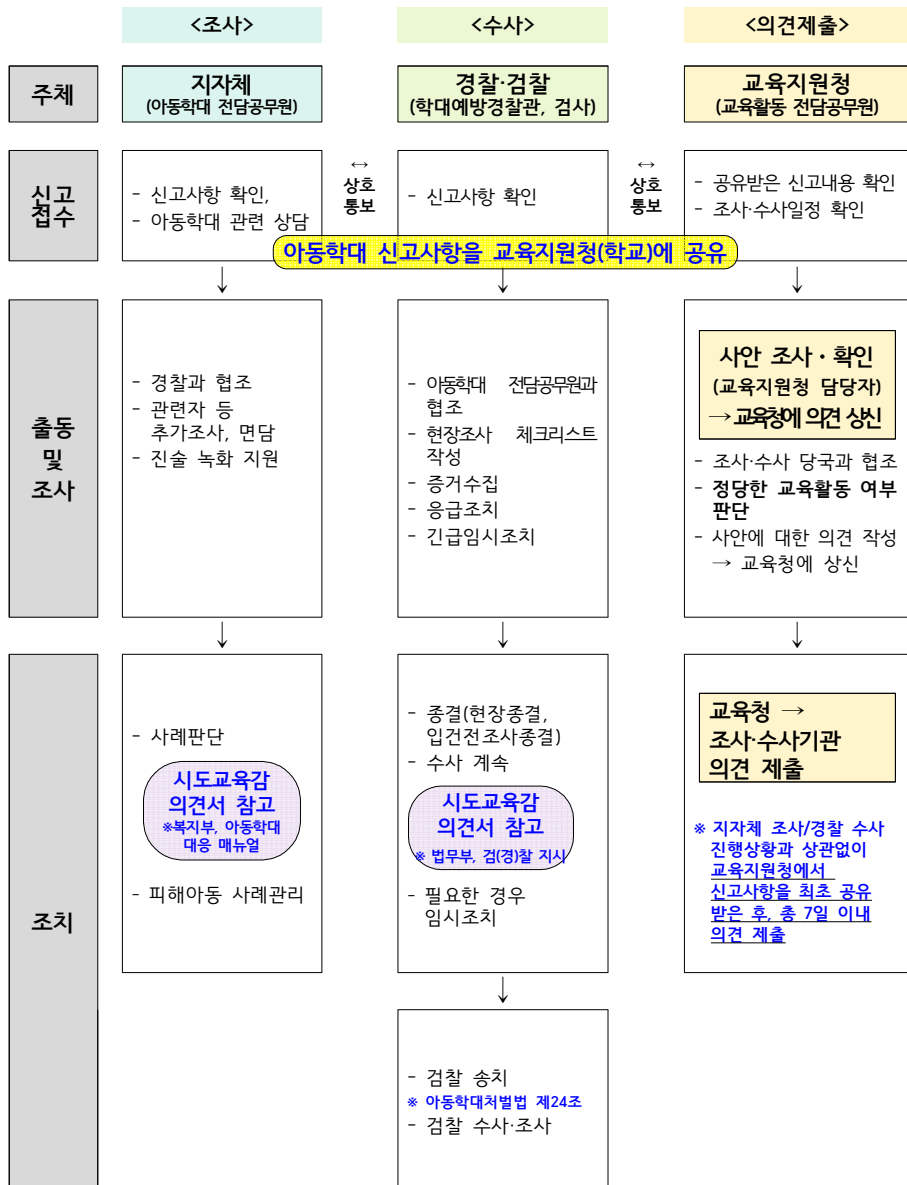
-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단위학교 방문 또는 부득이할 경우 유선으로 사실관계 확인
  - 필요시, 교육현장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자문 가능
- (사실 확인서 제출)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확인서(붙임1)'를 교육청으로 공문 상신(최초 접수후 5일 내)
  - ※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도, 근거를 명시하여 '의견없음'으로 공문 상신
-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청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관한 교육감 의견서를 공문 통보(교육지원청에서 최초 접수후 7일 내)
  - ※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도, 근거를 명시하여 '의견없음'으로 공문 통보
- (교육감 의견서 접수)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서'를 조사·수사에 의무적으로 참고함

## □ 지자체 신고 시

- (신고사항 공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 사안 발생 건(신고자 정보, 피해아동 정보 제외)을 유선과 공문으로 안내  
→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또는 유선 접수 시 사안 발생 1일로 봄

이후 절차는 112 신고 시와 동일하게 처리

##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업무 절차>



## 붙임1

## 교육활동 확인서 양식(교육지원청 → 학교 확인용)

<b>1. 아동학대 신고유형</b>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유기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기타학대 ※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표기(중복표기 가능)				
<b>2. 대상자 정보</b>	<b>교원</b>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비고
	<b>아동</b>	학년	소속	비고	
<b>3. 사안 개요</b>	[아동, 보호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사항]				
	※ 가능한 교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아동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등의 필수 [교원 진술]				
	[교원 및 학생의 관계]				
[비고 - 목격자의 진술 등]					
<b>4. 생활지도 해당여부</b>	[생활지도 분야]				
	<input type="checkbox"/> 학업 및 진로 <input type="checkbox"/> 보건 및 안전 <input type="checkbox"/> 인성 및 대인관계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생활지도 방법]				
	<input type="checkbox"/> 조언 <input type="checkbox"/> 상담 <input type="checkbox"/> 주의 <input type="checkbox"/> 훈육·훈계 <input type="checkbox"/> 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생활지도 여부 관련 서술]					
<input type="checkbox"/>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input type="checkbox"/> 학칙 <input type="checkbox"/> 교육주체 간 자체 규칙					
※ 학대로 신고된 사건 이전의 훈육과정(경고, 제재, 타학생 훈육) 확인					
[비고] ※ 필요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 첨부					

**붙임2**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대상자 정보	교원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비고
		<p>[피의 사실] 신고내용 및 수사개시 통보 사항 등 기재</p> <p>※ 발생일자 및 빈도 필수적으로 적시</p> <p>[확인 사실] 교육청 확인 사항 기재</p> <p>※ 교원 주장과 관련인의 진술이 구분되도록 적시</p> <p>[비고-목적자의 진술 등]</p>			
사안 개요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여부	<p>[생활지도 분야]</p> <p><input type="checkbox"/> 학업 및 진로    <input type="checkbox"/> 보건 및 안전    <input type="checkbox"/> 인성 및 대인관계</p> <p><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p>				
	<p>[생활지도 방법]</p> <p><input type="checkbox"/> 조언   <input type="checkbox"/> 상담   <input type="checkbox"/> 주의   <input type="checkbox"/> 훈육·훈계   <input type="checkbox"/> 보상</p> <p><input type="checkbox"/> 기타( )</p>				
	<p>[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의견]</p> <p><input type="checkbox"/>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생활지도고시 등)</p> <p><input type="checkbox"/> 학칙                    <input type="checkbox"/> 교육주체 간 자체 규칙</p>				
	<p>※ 학대로 신고된 사건 이전의 훈육과정(경고, 제재, 타학생 훈육) 확인</p> <p>[비고] ※ 필요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 첨부</p>				
<p>위와 같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 . . .</p> <p style="text-align: right;">○○○교육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경찰서·시군구청 귀중</p>					

**붙임3**

**교원의 생활지도 관련 관계 법령**

관계법령	세부 내용
초·중등 교육법	<p>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p>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p>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업 및 진로</li> <li>2. 보건 및 안전</li> <li>3. 인성 및 대인관계</li> <li>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li> </ol>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p>
유아 교육법	<p>제21조의3(학교의 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p> <p>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p>
교원 지위법	<p>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p>

	<p>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li> <li>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li> <li>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li> <li>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li> <li>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li> <li>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li> <li>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li> <li>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li> <li>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li> <li>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li> </ol> <p>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p>

	<p>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li> <li>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li> <li>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li> </ol> <p>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p> <p>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li> <li>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li> <li>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li> </ol> <p>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li> <li>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li> <li>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li> </ol> <p>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li> <li>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li> <li>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li> </ol> <p>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li> <li>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li> <li>3. 비행 및 범죄 예방</li> <li>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4장 기타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3-28호, 2023. 9.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